

< 별표 제1호 >

## 교육비 환불기준(제11조 관련)

### 1. 관리감독자 교육(집체교육 및 화상교육)

환불사유 발생 시점	환불금액
1) 교육 시작 1일 전	전액 환불 또는 교육연기
2) 교육 시작 당일	환불하지 않음, 당일 연기는 최대 5회까지 가능

### 2. 관리감독자 교육(우편교육)

환불사유 발생 시점	환불금액
1) 교육 시작 1일 전	전액 환불
2) 교육 시작 당일	환불하지 않음

### 3. 이러닝(동영상시청) 교육

환불사유 발생 시점	환불금액
1) 동영상 수강이력이 없는 경우	전액 환불
2) 동영상 수강이력이 있는 경우	환불하지 않음

\* 원 단위 절사